

'94년도 정보화관련 법령정비 현황

The Situation of Improvement of Law Related to Information

-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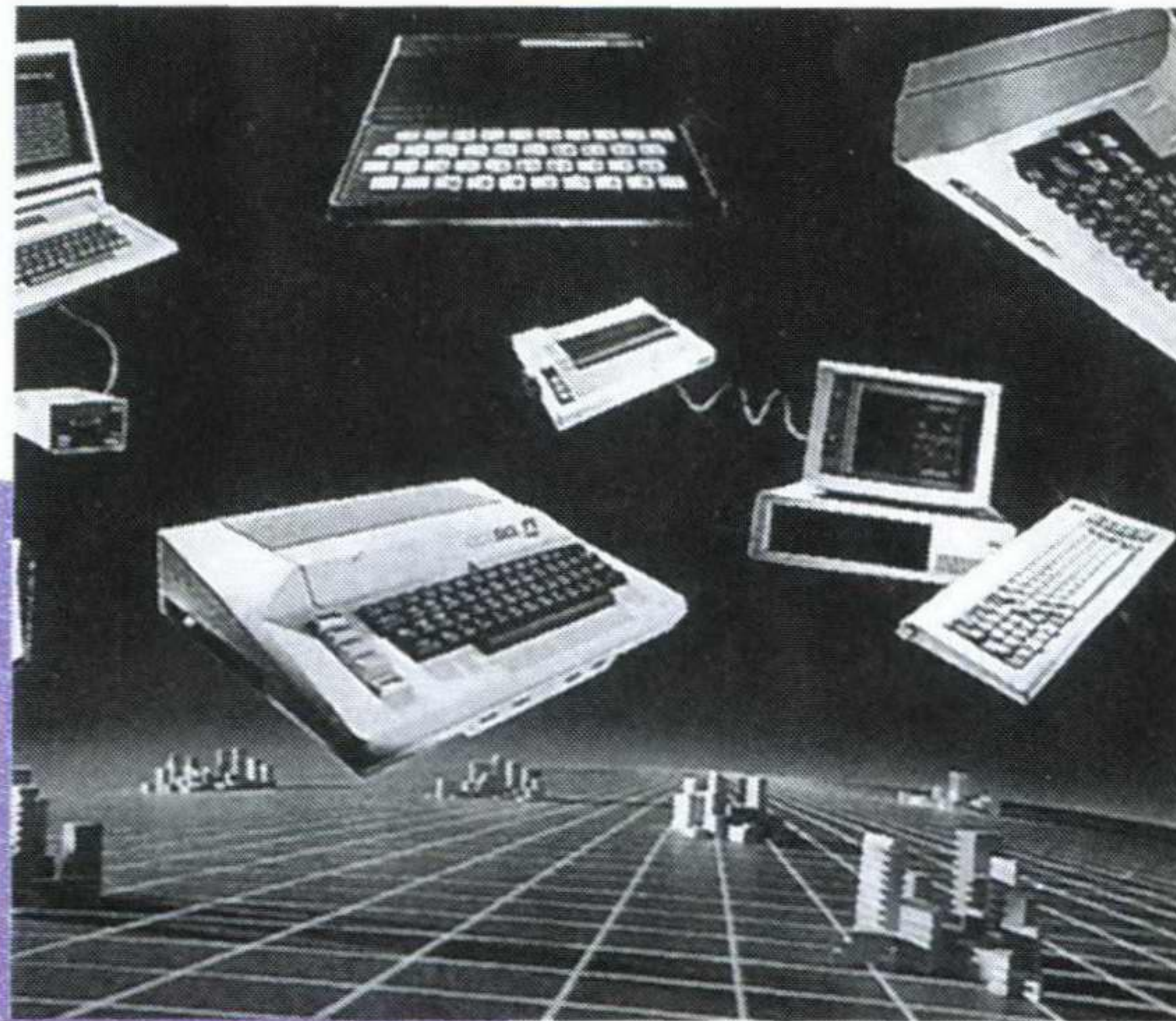
신각철

법제처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1. 머리말

가. '94 법령 정비의 개요

오 늘날 세계는 경제전쟁, 기술적 전쟁, 정보전쟁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기술과 정보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국가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도 국정목표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

된 법과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과 능률의 극대화를 이룩하고자 정보산업육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의 정보산업관련법령의 정비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후반기 개정된 정부조직법, 반도체회로법등은 다음호 수록).

첫째, 정보화사회에서 심각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등 역기능의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사생활의 비밀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채택,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주는 통신비밀 보호제도의 채택등을 들 수 있다.

둘째, UR지적소유권 협정과 관련하여 지적소유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강화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과 시행을 통하여 저작권의 권리보호, 불법복제행위의 강렬한 제재등을 들 수 있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보호방안을 새로 도입하였다.

셋째, 종합유선방송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격과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시행하였다.

2 사생활비밀·통신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94. 10. 29)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컴퓨

터처리·이용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초(94. 1. 7)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을 94. 10. 29 대통령령 제 14,408호로 공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정보를 컴퓨터처리에 있어서 ①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② 사전통보의 공고, ③ 제3자에의 제공. 제한, ④ 자기정보의 열람·경정청구등 통제권 부여 ⑤ 민간부문에 대한 보호조치 권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제정(94. 10. 29)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기관등

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민간부문은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법률시행령에서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시행령 제2조)

①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즉 공립·사립 초·중·고등 및 대학과 특수학교등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대학등에서 학적부·생활기록부등 컴퓨터처리하여 화일을 구축할 경우 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과 정

부투자기관이 적용대상이 된다.

(2) 단순업무처리등 적용제외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누출이나 악용의 우려가 적은 단순처리 업무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3조, 제6조)

- ①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 ②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 ④ 1,000명미만의 종업원의 인적사항등 처리위와 같은 단순한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라 하여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인원수의 경우도 소규모일 경우는 제외시켰다.

예컨데, 1,000명미만의 종업원의 인적사항등을 처리, 보유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사전통보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컴퓨터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000명미만의 개인정보확일이라 하여도 이 법률에 의한 보호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만은 제외된다.

(3) 처리정보의 열람청구 및 정정청구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를 받은 기관에서는 15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 열람일시·장소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열람이 제한되는 것으로 ①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② 불공정증권거래 방지 업무등을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정하였고,

법률에서도 조세관계정보, 학교성적평가, 감사관계, 병원진료기록등은 열람을 제한시켰다. 또한 자기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그릇되었을 경우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보유기관은 30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심의 위원회』 구성 설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공보처차관으로 하였다.

또한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시행

(94. 6. 28)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93. 12. 27)을 제정·공포하였고,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을 94. 6. 28 대통령령 제 14,289호로 제정·공포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도청장치등의 발달로 인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따라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 제한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이 법률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제한조치는 최소화

전기통신의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여도 계속하여 집행할 필

요성이 없을 때에는 즉시 중단하는 등 국민의 통신비밀침해를 최소화하였다.(시행령 제2조).

(2) 검사(檢事)등의 통신제한 조치

검사등이 수사과정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등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

또한 검사등이 작성한 조서등을 비밀보호하고 훼손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봉인·열람을 제한시켰다(시행령 제16조).

(3) 협박전화 등 불온통신 방지대책

협박·외설 등 불온통신을 송신하는 자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에 의한 협박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송신자 전화번호 확인제도의 도입으로 협박전화의 건수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하며, 점차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현장
등 채택 (94. 8. 22 비준)

국제전기통신연합현장(IT-U)에 94. 8. 22 조약 제 1, 237호로 비준함으로써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전기통신에 관한 각국과의 협력관계 유지, 최신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전기통신 분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94. 8. 22)을 채택하였다.

3. 종합유선방송제도의
개편 (94. 4. 22)

올해 연초에 종합유선방송법이 개정(94. 1. 7 법률 제4, 737호)되었고, 이 법률에 의하여 프로그램공급업의 참여자격이 제한되었고, UR등 방송의 국제화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관례등을 감안하여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994. 4. 22 대통령령 제14221호로 개정·공포하였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프로그램공급업중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의 참여자격이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과학기술·교양·스포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수입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현행의 30%에서 50%로 조정하였다.

4. 컴퓨터프로그램등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화

가. 불법복제방지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94. 7. 5)

UR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등 첨단분야 지적소유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크게 개정하였고 94. 7. 5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경우 『공표요건』 삭제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설·논문등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대부분 법인·기관·그밖에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소프트웨어하우스)등에 의하

여 단체저작물로 저작활동을 하게 된다.

종전의 규정은 ①법인등 단체가 기획하고, ②업무종사자가 ③업무상 창작하여 ④단체명의로 공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단체) 명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④의 공표요건을 삭제하였다(법제7조). 그 이유는 공표요건을 저작권 귀속요건으로 할 경우 미공표저작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법인등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복제하여 외부에 유출할 경우 처벌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단체명의로 공표하지 아니하여도 단체명의의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이 귀속된다.

(2) 프로그램대여권 신설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프로그램대여권을 신설하였다(법 제16조의 2).

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는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지난번에 협정된 UR지적소유권협정에도 명시되었다.

예컨대, 학습용 또는 게임용프로그램의 경우들이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대여받아 사용하고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자 또는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여 제작·배포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대여료를 지급한 다음 대여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친지간에 빌려주는 것은 허락받을 필요

가 없다.

(3) 불법복제를 최종사용자 처벌

종전에는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업무상 최종사용자의 경우도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와 똑같이 처벌받는다(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법제26조).

따라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등 취득과정에서 정품(正品)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정상적인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암거래를 피하여야 하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분쟁조정기구의 신설

종전에는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법원등 사직당국에 의해서만 해결을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법원등에 의하여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며,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소스(비밀자료)가 노출되어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 설치된 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종전에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등 저작권 침

해자에 대하여 벌칙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벌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불법복제하여 판매하고 많은 이득을 챙긴 뒤 벌금 300만원이하만을 내면 되기 때문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도 병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즉 벌금도 물고 징역도 살게 된다(법제34조).

나. 『데이터베이스』보호등

『저작권법』의 시행 (94. 7. 1)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UR저작소유권 협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수준에 맞도록 음반의 대여권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데이터베이스보호제도 신설 등 개정하였고 94. 7. 1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내용중 정보산업관련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6조제1항중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개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발전의 핵으로서, 정보이용의 효율화·극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종전에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편집물에 포함시키고, 이것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을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도 일반 편집저작물과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5. 맺음말

올해는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산업의 육성과 역기능의 방지등을 위하여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입법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와 등록관리문제, 전자출판의 법적성격과 관리문제 등등 정보산업분야의 법령정비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고, 특히 컴퓨터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의 개정도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과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정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서는 '94년도말에 공포된 법률로서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회로법,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등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QC

(다음호에는 '95년도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 현황이 게재된다.)